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7.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할증폭이 사업장 규모에 비례하도록 차등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혜택이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 및 영세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료 할증을 우려하여 산재사고를 은폐토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 차등을 폐지하고 최대 할인·할증폭을 축소하여 대·중소기업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의 최소규모 기준을 상향하여 영세 사업장의 산재은폐 요인을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50% 또는 10%를 징수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영세사업장의 경우,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산재사고를 은폐하거나 심지어 폐업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5배로 징수액의 상한을 두어 과도한 징벌을 지양하고 산재은폐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 범위 및 사업장 규모별 최대 할인·

할증폭 조정(안 제15조제1항, 별표 1)

1)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 사업장 범위를 기존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으로 조정함.

2)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할증 폭을 기존 사업장 규모에 비례
하여 20%부터 50%까지 차등하던 것에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20%로 적용함.

나. 보험급여 징수액 상한 신설(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징수 상한액을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로 제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조희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20억원”을 “6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명”을 “30명”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며,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
간 중에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
9년도의 산재보험료를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제18조제1항 관련)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보험수지율)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5%까지의 것	20.0%를 인하한다
5%를 넘어 10%까지의 것	18.4%를 인하한다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16.1%를 인하한다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13.8%를 인하한다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11.5%를 인하한다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9.2%를 인하한다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6.9%를 인하한다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4.6%를 인하한다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2.3%를 인하한다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0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2.3%를 인상한다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4.6%를 인상한다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6.9%를 인상한다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9.2%를 인상한다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11.5%를 인상한다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13.8%를 인상한다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16.1%를 인상한다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18.4%를 인상한다
160%를 넘는 것	20.0%를 인상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 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 사업) ① ----- ----- ----- -----.
1.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u>20억원</u>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 ----- ----- ----- <u>60억원</u> -----, ----- ----- ----- ----- ----- ----- -----.
2. 건설업 및 별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u>10명</u>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	2. ----- ----- <u>30명</u> -----, ----- ----- ----- ----- ----- ----- -----.

[illegible]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